

## 第 1 主題 討論要旨

**崔連坤(사회자) :** 討論者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는 사법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철폐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法大출신에 한해서만 司試에 응시할 수 있는 資格을 부여하는 從來의 입장을 主張 하셨습니다. 둘째로 法學教育은 전문교육이면서 교양교육을 겸하는 두 가지 側面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세번째 法의 目標로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즉, 法의 人間化의 實現 그리고 法學의 고유한 目標인 正義의 實現을 얘기하셨습니다. 네번째는 法學의 教育方法論은 결과적으로 우리 現實을 보아 質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法科大學의 下級學年에 있어서는 대체로 講義式으로, 고급학년에 있어서는 case-method를 아울러 活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演習時間에 있어서 case-method를 活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司法試驗의 출제방식의 改善을 통하여 法學教育의 改善을 기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討論에 참여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를 염두에 두시고 發表內容에 대한 異見 내지 補完의 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다順으로 먼저 成均館大 法大 高翔龍 學長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翔龍(성균관대) :** 대단히 간략하면서도 要點을 전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平素 생각하였던 것과 같기 때문에 제 자신이 무어라 덧붙일지 당황하기조차 합니다.

되풀이 될 지 모르겠으나 먼저 法學教育의 目標設定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梁교수님께서 직업교육과 教養教育의 두 側面을 살피면서, 직업교육으로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직업교육을 받아보았자 判事・檢事 등의 法律家의 기능을 擔當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이외의 직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社會에서 부딪칠 수 있는 여러 가지 法律문제물 다룰 수 있는 法律전문가의 養成이라는 多元的 目標을 가지고 法學教育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전적으로 同感입니다.

흔히 美國을 예로 들면서 法學교육의 方法論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Law School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梁교수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어떠한 內容으로 法學教育을 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얘기하였지만 우리는 多元的인 目標을 가지고 法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法律家로서의 교육과 法律家는 아니나 각 직업에서 法律的 知識으로 기능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교육 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의 法學교육을 담당하느냐가 중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梁교수님께서 人間化의 實現・正義의 見現을 특히 강

조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法學教育만의 목표는 아니고 大學教育全般에 걸쳐 추구되어야 할 것이나 法律가가 직·간접으로 사람의 生命과 신체를 다루기에 法學教育의 目標로서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法은 외국의 것을 받아들인 만큼 우리의 法과 실제 사회에서 인식되어지는 規範과는 상당한 gap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法을 우리의 것으로 배어들게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인들은 法律知識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法學教育의 目標로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法律知識을 보급할 수 있는 人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人間化의 문제·正義의 구현의 문제와 아울러 法律知識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는 것이 法學教育의 目標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육方法에 대하여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梁교수님께서서는 講議式과 事例式의 병존方法의 不可避性을 얘기하셨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외국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東京대가 바로 그러한 예가 됩니다. 1~2학년에는 종합강의실에서 600명 정도가 강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3~4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즉, 한편으로는 종합강의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식의 演習方法을 活用하고 있습니다. 이 方法은 선착순으로 20명 정도로 反편성을 하고 있는데, 각 담당교수는 나름대로의 테마를——예를 들면, 損害賠償責任——잡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 교수마다 20명 쯤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제 기억으로는, 약 10개 class를 운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는 判例 중심이 아니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기초적으로, 比較法的으로 다루는 方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또 다른 하나는 약 50명 단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그곳에서는 socrates metho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方法은 주로 判例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몇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判例 中心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다음 번에 하게 될 判例내용을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교수는 앞에 앉아서 無作爲로 A학생, B학생 등을 지정하면서 事實關係가 무엇이나, 判決要旨나 上告理由는 무엇이나 등의 질문을 계속하면서 事件의 核心을 파헤쳐 가는 것입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이상 法學교육의 初期부터 case-method를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法典에서부터 출발하여야 즉 法解釋學에서 出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法學이 實踐的 성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나아가 case-method를——事例를 中心으로 하든, 判例를 中心으로 하든——活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法科大學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 知識을 사회에서 實際로 活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梁교수님의 말씀을 반복한 셈이 되었으나 이러한 점들은 제

가 平素에 생각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高貞明(국민대) : 국민대학의 高貞明입니다. 저는 이 발표논문을 며칠 전에 미리 읽어 보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成均館大의 高학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法學教育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점들을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대학에서의 法學教育이 과연 滿足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法學教育을 받던 시기는 195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던 시기의 教科書와 지금의 教科書를 비교해 보면서 과연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특히 “우리의” 것이 너무나도 없나라고 여겨집니다. 외국에서 계수된 法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겨우 法解釋에 급급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法學教育은 形而上學的 문제나 다루는 象牙塔으로만 남아 있지 않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發表者께서도 언급하셨듯이 法學이 社會의 변화에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全無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저로서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셈이 되지만, 우리의 法學教育이 人格教育도 職業教育도 아닌 어중간한 것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法學教育은 量的 膨脹·質的 빈곤의 갈등의 모습을 解放 이후 계속하여 노정시켜 왔습니다. 저 자신이 民法總則을 강의하면서도 지난 25년간의 강의 동안에 만족스러운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의 졸업이수學點은 160 학점이상이었는데 實驗大學의 도입으로 140 학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大學마다 수년 전부터 그것을 조금 올려보려고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綜合大學의 學事관리의 획일성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同一한 納付金を 가지고 法科大學만이 學點을 더 이수케 할 수 없다는 게지요. 이러한 反對를 大學의 敎務委員會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두서없는 얘기일지는 모르나 저는 여기 서울大法大에 와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1988년도를 기준으로 法大의 신입생정원은 약 6,500명 정도가 되는데 司法試驗의 合格者는 그 수의 5% 未滿입니다. 이 상황에서 法大의 教育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가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司法合格者는 사실 大入學力考查의 高得點者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일부 特定大學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法官의 人脈이 形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法學敎授들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率制세력의 不在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저는 司法試驗제도의 改善 내지 法學教育의 方法的 改善를 심각하게 고려해 봅니다. 우리의 경우 大學 4년 동안에 기타과목 등으로 힘을 분산시키다보니 알맹이 敎育을 시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反面 미국의 경우 大學 4년 기간에 社會學·생물학 등의 다양한 敎育을 받은 후 우리의 大學院에 해당하는 law school에 진학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입니다. 그들은 大學院과정에 해당하니까 事例연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들의 判例法體系가 이를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지적 하듯이, 우리의 경우 事例中心의 教育이 잘 되지 않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法體系가 相異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解釋法學에 충실하고, 論點을 파악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아까 언급하였지만 法曹界內에서의 相互牽制의 문제를 法大 스스로가 이를 해결하도록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한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더 이상 詳論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처럼 法官이나 法學教授들의 구성이 계층적으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新進學者들이 자유로이 창의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社會問題를 근본적으로 考察할 수 있는 기초의 確立을 위하여 저는 教科內容에 있어서 基礎法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는 기초법학을 가르치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 이유는 入學定員이 60명 되는 학과에 교수가 10명이면 되었지 또 무슨 교수를 必要로 하느냐라는 式의 반발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學內에서 아무리 투쟁해 보아야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教育部나 法學教授協議會 등의 단체가 힘을 써서 저희같이 작은 대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60명의 입학정원을 가진 대학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이지만 몇 마디 더하고 싶으니 원로선생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法學은 繼受法學, 輸入法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繼受法學에 대한 評價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評價를 歷史法學者들·法制史를 하는 분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예컨대 民法은 民法學者들이 살펴서 우리의 고유한 法을 發見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生活法學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한편, 제기하고 싶은 것은 立法法學의 不在입니다. 우리는 1948년의 憲法의 法治主義의 원칙에 따라 여러 法律 예컨대, 1958년의 民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民法의 개정이 그 때 그 때에 이루어져 現實과 상당히 괴리된 結果가 나타나곤 합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지난 家族法改正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立法法學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立法 이전의 문제로서 한국인의식에 대한 연구가 不足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法學方法論에 있어서 개념법학의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實證的인 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경우 制定法의 해석에 급급한 方法에 치우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과 한국法學間의 차이가 문제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가서 博士學位를 取得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공부기간이나 논문작성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局部的인 영역의 이해에 그치지 않나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법 全體의 파악이 不充分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독일박사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웃음).

그리고,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 것은 教科書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도 교과서를 써 보았지만 제 책의 두께는 얇습시다.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목침 두께 만큼의 교과서들이 있더군요. 그 내용을 보면 大學院 아닌 학부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말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民法總則을 1학년 2학기에 가르칩니다. 이전에는 1학년 1학기에, 그러니까 대학 들어오자마자 강의했답니다. 이러한 어린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교과서의 분량이 뭐 그리 많은지, 그토록 많은 學說이나 외국학자의 이름이 과연 必要한지 의구심이 든답니다. 학부과정에서는 通說의 이해로 充分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의 여러 法大學長님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法學教育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함께 苦惱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예, 감사합니다. 高학장께서 워낙 적극적이어서 제가 미처 소개해 드리기도 전에 討論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소개해 드리자면, 국민대에서 民法를 담당하시는 高貞明 學長이십니다. 다음에는 慶北大의 郭東憲 學長이십니다.

郭東憲(경북대) : 저도 오늘 주제인 한국의 法學教育의 반성과 개혁 중에 法學教育의 목표와 教授方法論에 국한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法學教育의 문제는 진부하면서도 그 때 마다 참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논의해 온 이 문제에 대하여 저로서는 더 이상의 새로운 教育目標나 方法論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장되어 온 여러 결론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현실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과거의 “소리없는 메아리”를 만들었던 制約條件은 바로 司法試驗制度입니다. 이 制度의 개선이 없이는 오늘의 심포지움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司法試驗制度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發表者가 얘기해 주신 人間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法學教育·正義실현을 위한 法學教育을 위해서는 解釋法學보다는 기초法學·이론法學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로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方法論에 있어서도 강의식보다는 事例式이 더 바람직한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司法試驗때문입니다. 그래서, 當爲論을 얘기하자면 司試의 개선을 보다 強力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現實論을 얘기하자면, 發表者의 주장에 어떠한 異論을 제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의 심포지움이 어느 정도의 결실을 얻으려 한다면 司試제도의 개선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法學教育의 年限 등의 문제는 오후 分科에서 다루겠지만 말입니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人命輕視·非理·不條理 등의 存在와 이에 대한 改革의 未盡입니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文化的 價値·秩序 등의 인식 不足이 더 두드러져 왔습니다.

그 동안 經濟教育은 강조되어 왔으나 秩序를 내세우는 法學教育은 상대적으로 왜소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의 심포지움이 주로 法學教育에 국한된 까닭에 이 자리에 總·學長님, 여러 教授님들이 오셨지만, 제 생각에는 民主化가 곧 法治國家化를 의미하므로 이 자리에 政府·與黨·野黨은 물론 司法府에 계신 분들도 參席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法學教育의 초점으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면 또 하나의 공허한 배아리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위 두 가지의 얘기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부산대 법대 千炳泰학장이십니다.

**千炳泰(부산대) :** 저는 지난 6월에 日本 九州大學의 九州法學會에서 개최한 오늘의 주제와 同一한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국의 法學教育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고 제 分野인 한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法大學生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法을 지켜야 합니까? 아마 99%의 대답이 국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法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法學을 하려고 하니가 어떠한 해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法은 統治者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統治者가 지키지 않는 法을 일반국민이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法學教育이 既存의 institution에서는 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參席하였던 九州法學會에서의 結論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法科大學이라는 기존의 institution에서는 法學教育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참석하였던 여러 기업의 人事擔當者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法學教育을 얘기하였는데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法科大學은 必要없다는 것입니다. 梁교수님의 지적처럼 Murphy 法授의 얘기 그대로입니다. 權力과 法作用이 同一하다고 생각하는 獨善의 견해에 빠져있는 사람들로 가득찬 데서부터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서울대에는 law department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학생 중에서 의학이나 생물학을 공부하다가도 民法·商法을 공부하고 싶으면 듣게 해 준다 이거죠. 예를 들면, 지질학과의 학생이 아버지의 주식투자를 위하여 여기 梁교수님에게서 주식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거죠. 이것으로 바로 法學教育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人間化·正義社會의 구현이라는 다 아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法學教育의 目標라 할 수 있는 「法 지키는 人間」을 만드는 方法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法 지키는 人間」과 「法 지키는 人間」은 다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梁박사님께 「法 지키는 人間」을 만들 수 있는 方法이 없을까하고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심포지움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해서도 5번이나 열렸습니다. 이토록 여러번 討論해 온 주제를 또 얘기하는 이 자리에서 다 아는 얘기를 논의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까 權박사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보자 그러셨는데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法科大學이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울대 法科大學의 權威의식, 교수님 개개인이 가진 권위의식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이전에 김용옥교수의 「대화」라는 책을 읽어 보았는데, 거기서 교수의 이런저런 모습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묘사된 교수의 안일한 태도가 잘 못하면 우리 法學教育의 方法論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50분 강의 시간에 case-method라 하여 문제제기하고서 시간을 다 써버리면 자칫 교수에게 더 안일한 자세를 보장해 주는 셈이 된다 이거죠. 물론 200년 동안의 判例가 집적된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같이 判例의 축적이 미약한 경우 싸움 좋아하는 인간교육 밖에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오늘 梁박사님께 「法 지키는 人間」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基礎法學 문제인데요. 아까 어느 교수님의 지적대로 기초법학이 不充實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특히 法 지키는 人間교육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1983년 이후로 기초법학교수가 空席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공교수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풍토를 서울대법대에서 없애 주었으면 합니다. 저로서는 기초법학이 잘 되면 법 지키는 인간교육이 잘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法은 일국민이 아니고 統治者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法 지키는 人間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梁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의 討論을 종합해 보면 무엇보다도 司試制度가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의 강의방식 특히 東京大나 Harvard大의 방식의 채택은 어떠한지, 人間化라는 목표를 위해 기초법학이 강조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千학장께서는 法지키는 인간을 만드는 方法을 계속 문제시하였습니다.

討論者로서 저도 위의 얘기에 共感하는 바입니다. 제가 討論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法學교육의 理想은 法專門家의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대처럼 졸업후의 國家試驗제도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現實을 감안한다면 결국 專門教育 外에 梁교수님이 얘기하신 教養教育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교양교육을 一般教育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이같이 法學교육이 일반교육을 포함해 나갈 때, 法大出身들이 司法府는 물론 行政府에서도 上位의 자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東京大法大의 最上層은 大藏省으로 가고, 또 外務省이나 미쓰비시 등의 財閥會社로 진출한답니다. 이는

elite층이 반드시 法曹界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북한의 人文社會系列의 最上層은 金日成大學의 法學部로 간담니다. 이러한 말씀을 굳이 드리는 까닭은 그만큼 法學교육을 받은 사람이 社會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法學전공자들이 모두 司法府에 갈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내년 부터는 行政高試에 法務行政職이 생기는데 이는 그동안 行政府內에 法科學生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보다 더 충실한 教育을 하여야 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現實에서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깨뜨리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학기 강의를 생각해 봅시다. 16주간의 강의시간이 여러 이유로 잘라 없어지고 맙니다. 개강 후 한 주는 사실상 휴강하며, 중간·기말고사로 인하여 각 한 주간, 이 시험준비를 위하여 각 한 주간씩 휴강합니다. 또한, 매년 갖고 있는 체육행사를 위한 4~5일의 휴강 등으로 해서 많은 수업결손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까닭은 어떠한 이유로든 수업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때문입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分班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入學定員이 290명인 까닭에 4개 반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큰 규모입니다. 저는 30명 정도의 分班이 理想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으로서는 遼遠합니다만.

반면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司試 등의 시험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대학이나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120명 배정된 수업 시간에 20~30명 정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合班하는 것이 나을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中間考查같은 정기적인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2주 정도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 대신에 시험을 자주 치르는 方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학생들에게 다음 강의 내용에 대하여 요약정리 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제출된 보고서를 일일이 검토하느냐의 문제는 技術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검토하는 척 해도 어느 정도의 教育效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助教制度의 活用이겠지요.

이상의 내용은 아주 枝葉의이지만, 저로서는 행정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floor에 계신 분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煥淡(전남대) :** 전남대의 鄭煥淡입니다. 여러 高見을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家族法의 改正으로 인하여 예를 들면 아이를 法大로 보낼 것이냐 晉大로 보낼 것이냐가 父母간에 문제로 될 경우 家庭法院이 判斷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부모가 완도나 청산도에 사는 경



우라면 이는 심각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法의 現場에 대하여 立法者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法이 서울共和國의 法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現場의 문제요 制度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의 산간오지나 도시지역의 土地를 관장하는 登記所가 郡 단위에 있고 民事裁判은 5~6郡을 관할하는 支院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家庭法院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家族法의 改正으로 종전 親族會가 하던 일을 이제는 가정법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現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正義·人間化를 云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共同體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였지만 登記事務는 중요한 사항인데, 登記所의 실치가 現場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착 도시 지역의 주민들은 移轉登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며 또한 土地耕作者名簿를 土地登記簿로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現場調査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法學教育의 한 方法으로서 基礎調査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서울대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司法試驗에서 300명을 選拔할 때 分野別로 必要性에 따라서 즉 專門인 영역, 基礎인 영역으로 多樣하게 선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 法學의 多樣性이 국제화시대에 유연성·포용성을 확보시켜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한 梁교수님의 高見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그럼 質疑를 받겠습니다.

**崔鶴基(창원대)** : 저는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옛날의 京城法專이 日帝의 御用노릇을 하였고, 지금의 서울대는 주로 미국의 어용노릇을 하는 교수에 의하여 교육받고 있다는 혹평을 누군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진에 高학장의 말씀처럼 우리 法精神에 입각한 法연구나 法學教育을 제대로 하였는지, 나아가 서울대가 위의 혹평에서 벗어날 수 있는 方案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일의 大學처럼 우리의 法科大學의 학생의 多數가 변호사 등의 法曹界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改善方案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方法에 관련된 사항인 데요. 現實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事例式을 강조하기 위하여 司試에서 事例式을 제출할 수 있는 方案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學生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 제 얘기보다는 먼저 어느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法과 法律의 區分에 대한 것입니다. 法律을 中心으로 생각하면 惡法도 존재할 수 있으나 法을 中心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法大生에게 문제되는 것은 出世指向의 司試공부를 추구하는 사실입니다. 이러

한 경향이 法大교육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司試制度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부과정을 6년제로 하여 2년의 예과·4년의 본과과정으로 운영하는 것, 司試응시 자격을 3학년 이수 이상으로 하는 것, 졸업후 몇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자 :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의 질의를 그만 두고 이제는 梁교수님의 答辯을 들겠습니다.

梁承圭(서울대) :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과 문제제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러 질문의 내용에는 제 주제 범위를 넘어선 내용들도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넘기겠습니다.

먼저 高翔龍학장의 말씀처럼 우리도 日本의 「세미」같은 方式이 3,4년 정도에는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高貞明학장의 날카로운 문제지적에 同感입니다. 저는 종종 사회가 잘못된 이유 중의 하나가 法大교수에게 있다고 듣습니다. 法大출신들이 곳곳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컨대 法曹界가 힘있는 자에게는 너무 약하고 약한 자는 눈감아 버리는 태도를 취하는데 이걸 매우 그릇된 것입니다. 法이란 人間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自己가 살기 위하여 他人을 해치는 것은 容納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法服을 입고서 고문당한 자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매우 나쁜 罪에 해당합니다. 이른바 裁判殺人은 路上強盜보다 나쁩니다.

한편, 우리가 외국의 法學을 繼受하고 우리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점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의 朴秉濂·崔鍾庫교수님의 시도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郭東憲학장의 견해에 同意합니다. 사실 司試制度和 法學교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權威主義的인 權力者들에 의하여 司法試驗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 1972년 試驗자격제한을 철폐할 때 當時의 總務處長官은 바로 京城帝大를 졸업한 法律家였습니다. 이는 上命에 盲從하는 法律家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國家를 위해서도 百害無益합니다.

한편 千柄泰학장님의 逆說的인 지적은 우리에게 많은 反省을 생각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法을 지켜야 할 자는 바로 統治者입니다. 法이 윗사람들을 제대로 규율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法 위에 君臨하려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國民의 自覺이 요구됩니다. 특히 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法律家들의 철저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저는 1977년에 R. Kennedy의 「The Enemy Within」이라는 책을 번역하였습니다. 거기서 權力과 결탁한 勞組의 갖은 不正에 대하여 生命을 걸고 싸우는 法律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美國이라는 사회가 그래도 지탱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法律家의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崔達坤학장님이 제기하신 문제 중에 중간시험前의 휴강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행사때문에 수업을 하지 못한다거나, 명절 때의 연휴를 이유로 휴강하는 것은 안 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들의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鄭煥淡선생님의 現場의 문제는 실제로 심각합니다. 法學이란 現實을 규율하기 때문에 阜上空論式的 논의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家族法을 잘 모르지만 傳統倫理를 무시한 法의 改正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조사 등의 方法은 아주 有用하고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昌原大 崔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점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教授들이나 學生들이나 우리의 사회현실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 책을 쓰면서 국내서적을 주로 活用하되 꼭 必要한 경우에만 외국학자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선배·동료의 연구를 기초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司法試驗제도는 法大졸업생의 80~90%가 合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法大졸업생이 法曹人뿐 아니라 다양하게 진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성 法律家들이 司法合格者의 수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수의 合格者 중에서 資質있는 자를 法官·檢事 등으로 任用하고 또한, 많은 辯護士들을 기업체 등으로 진출하게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들어가는 辯護士들도 처음부터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課長 등의 실무계 층부터 단계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司法에서도 事例式的 제출은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한 질문은 오후 分科에서 다뤄질 내용인 까닭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그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